



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시행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일부개정 예정인 「하천법」의 개정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일시적 하천수사용신고 제도 시행[법률 제13689호, 시행 2016.6.30.]

o 용도 :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o 처리기간 : 5일[기존 하천수사용허가 처리기간 22일]

나.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조항 삭제[법률 제13808호, 시행 2016.7.20.]

※ 자세한 사항은 개정 하천법 시행 전 금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www.geumriver.go.kr)에 게시 예정

3. 개정된 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의 비산먼지 방지 및 청소 등의 작업용수 사용을 위한 살수차(청소차)의 경우 기존 하천수사용허가를 대신하여 일시적 하천수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기관에서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하천수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시 하천수사용계획에 따른 신고 및 하천수사용료 납부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금강권역(삽교천 및 금강서해 포함)에서 위의 목적으로 취수를 할 경우 반드시 우리소로 부터 일시적 하천수사용신고증을 발급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소관현장 및 회원사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금강홍수통제소장



수신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전라북도지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청주시장, 보은군수, 음성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천안시장, 계룡시장, 금산군수, 부여군수, 서천군수, 태안군수, 공주시장, 보령시장, 아산시장, 서산시장, 논산시장, 당진시장, 청양군수, 홍성군수, 예산군수, 익산시장, 진안군수, 군산시장, 무주군수, 장수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대전도시공사사장,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충북개발공사 사장, 대한건설협회장

06/20

주무관 **최용준** 주무관 **최혁준** 과장 **원유승** 소장 **김양수**

협조자

시행 예보통제과-1417 (2016.06.20.)

접수 기술정책실-375 (2016.06.27.)

우 32595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551 금강홍수통제소 / <http://www.geumriver.go.kr>

전화 041-851-0526 전송 041-853-1078 / hydroyj@molit.go.kr / 공개

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 호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